

2023년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채용시험 재공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상임전문위원 (라등급)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표준(KS)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 : 채용일부터 1년(계약 만료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협의 가능)

○ 보 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공지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기타직보수 중 위원회 상근직" 보수를 적용(라등급)

* 전문위원(라등급) 2,376,600원 / 월(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규 정 : 상임전문위원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내규) 등

2. 응시 자격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공학계열(화공/기계/전기·전자 등) / 경영학과 / 표준관련학과(표준개론 또는 표준정책론 등 전공필수과목 이수) 중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남자의 경우 면접 시험 기준일 현재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3.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백분을 환산 성적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평가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성적)
 - * 공인기관 발급어학성적 증명서(TOEIC, TOEFL IBT, TEPS 등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제출기간 : '23. 9.22.(금) ~ '23.10.13.(금) 18:00까지
- 제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사팀
- 문의전화 : 043-870-5325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2. 응시 자격요건”의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제1항은 최종합격여부 결정시 심사)
-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 결과에 따라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②대학교 성적, ③어학능력, ④국제협력·표준 관련 업무경력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실시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정요소를 평가
 -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6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평정요소

①상임전문위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인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언어표현력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3. 9.22.(금) ~ 10.13.(금)	'23.10.20.(금)	'23.11.1.(수)	'23.11. 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에 공고 예정이며,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랍니다.

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제5호>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1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하거나 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기재

응시원서

본인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응시 직종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국적명:)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생년월일	. .		
주 소	(우)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화(자택 등)	



응시표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종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면접)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안내된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기간제 상임전문위원
-----	--	------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글씨크기 12, 줄간격 160%)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글씨크기 12, 줄간격 160%)

<서식 제5호(필요시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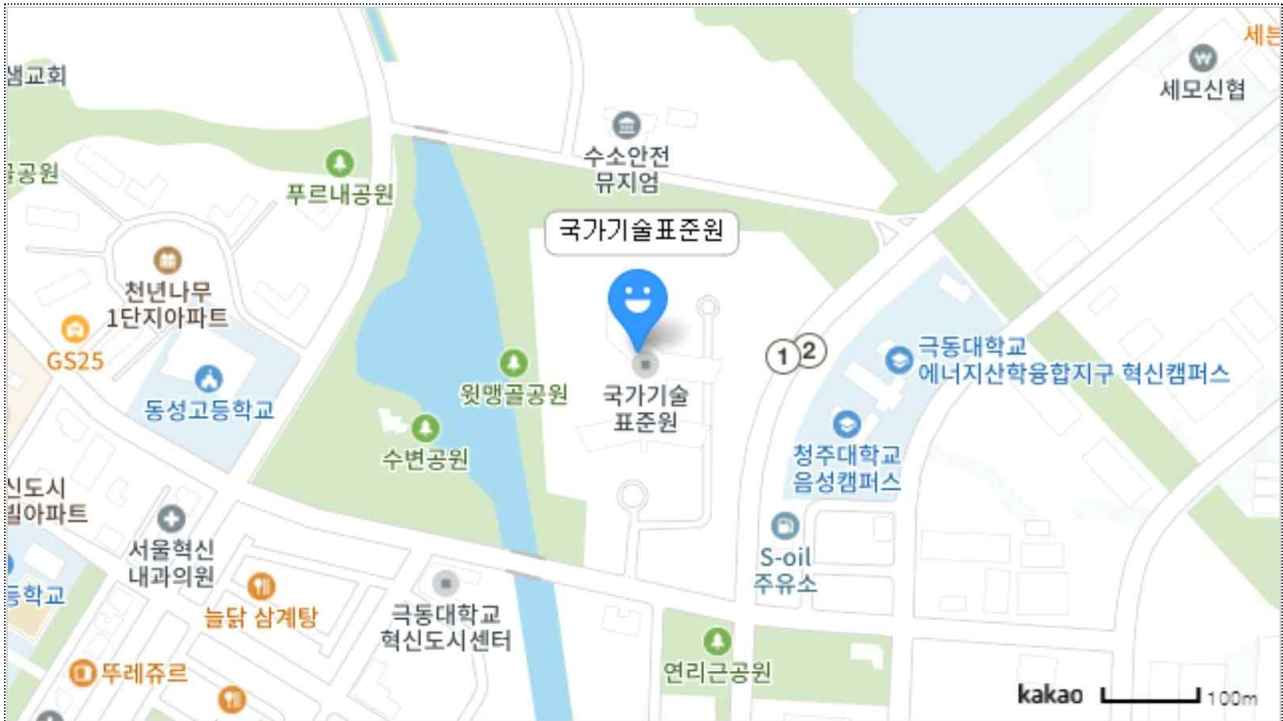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찾아오시는 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600
고속도로 (승용차 이용)	중부고속도로 → 진천IC → 안골삼거리(우회전, 충북혁신도시 방면) → 신둔교차로(진출로 이용 우회전, 충북혁신도시 방면) → 교연로 충북혁신버스터미널(좌회전, 국가기술표준원 방면) → 교연로 별내옥(좌회전, 국가기술표준원 방면) → 국가기술표준원(입구) 평택제천고속도로 → 금왕꽃동네IC → 금왕꽃동네IC교차로(좌회전, 맹동산업단지 방면) → 쌍정교차로(좌회전, 두성리 방면) → 교연로 별내옥(우회전, 국가기술표준원 방면) → 국가기술표준원(입구)
버스	충북혁신도시터미널 이용(동서울 등 노선) → 도보 20분 또는 순환버스 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